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기간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실 통보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 등에 관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나. 징계사실 통보 서식 마련(안 제13조의4 개정)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징계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의12에 따른 징계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중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1항”을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동조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조합원 수		
	대표자	설립 연월일		
사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경력	기간		조합원 수	전담 직위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인)

노동조합장·회사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노동조합장 인

회사 대표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이란 사용주가 신청인에게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입니다.
-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의법조치 됩니다.

[]산업별 연합단체
[]총 연합 단체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동조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조합원 수		
	대표자		설립 연월일		
노동조합 업무 전담 경력	기간		소속	전담직위	조합원수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인)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노동조합 위원장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이란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되는 경력을 말하며 일반 행정사무 등의 경력은 제외됩니다.
-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되는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의법조치 됩니다.

사업장 노무관리업무 전담경력증명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채용 연월일		퇴직 연월일		
노무관리 전담경력	기간		부서명	전담직위	상시근로자수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인)

회사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회사 대표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사업장 노무관리 전담경력”이란 노무관리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될
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의법조치 됩니다.

사용자단체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증명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채용 연월일	퇴직 연월일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	기간	직위	전담 업무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인)

(사용자단체)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사용자단체) 대표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이란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의법조치 됩니다.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징계사실 통보서

다음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일)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징 계 사 실	
공인노무사 을(를)	에 처한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생략) <u><신설></u>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의12에 따른 징계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다.